

2026년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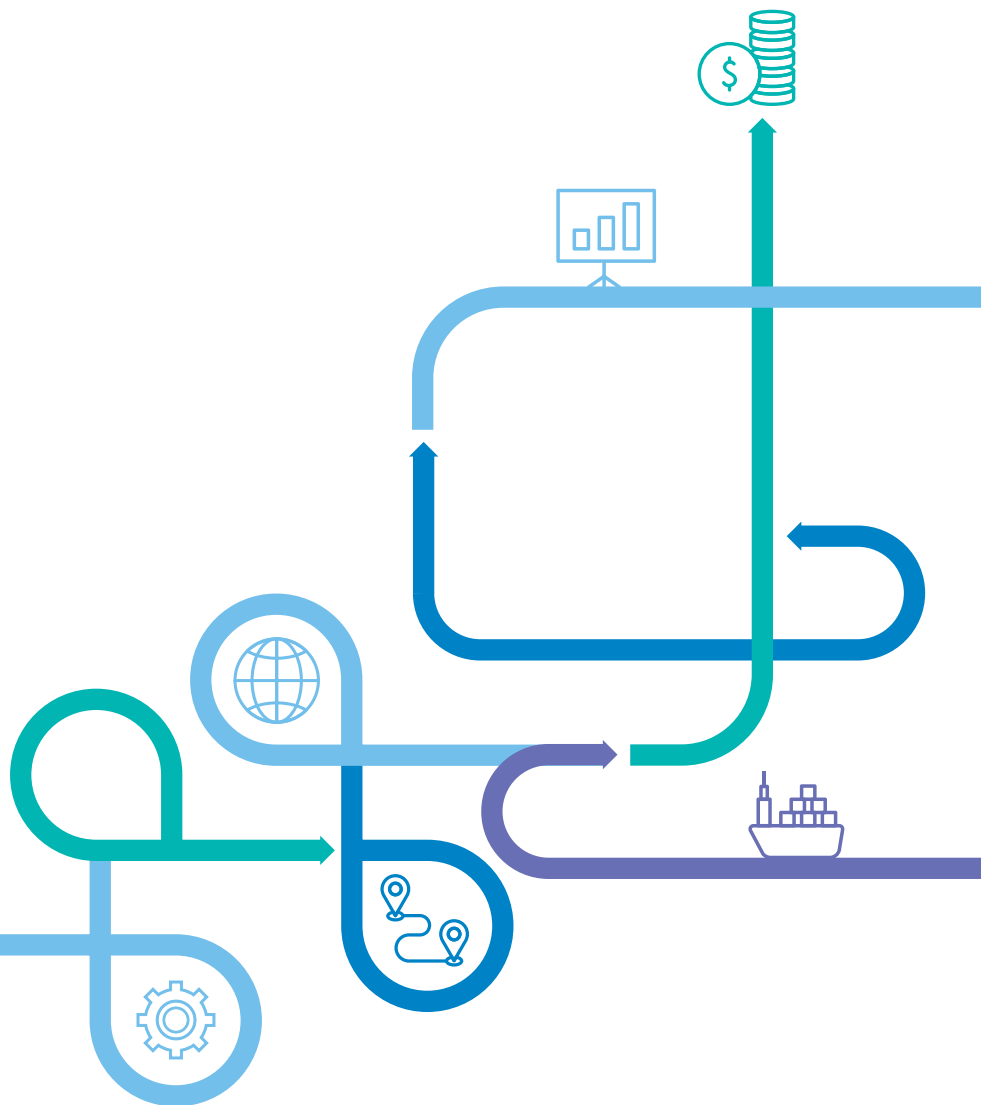
미국 CBP 사전심사 동향 분석 리포트

[미국 품목분류 판정 사례]

전기식 비데
전동식 스쿠터
유압 실린더 및 액추에이터
렌즈 조작 모듈
현수 스트링
보행기 바퀴 커버
장식용 목재 명판
도서 세트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차량 시동장치
보조배터리



CONTENTS

1. 리포트 개요

2. 품목분류 판정 사례

- 2-1. 전기식 비데
- 2-2. 전동식 스쿠터
- 2-3. 유압 실린더 및 액추에이터
- 2-4. 렌즈 조작 모듈
- 2-5. 현수 스트링
- 2-6. 보행기 바퀴 커버
- 2-7. 장식용 목재 명판
- 2-8. 도서 세트

3. 원산지 판정 사례

- 3-1. 차량 시동장치
- 3-2. 보조배터리





01. 리포트 개요

(1) 분석 대상

- 2026년 3월 미국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사전심사 사례 중, 품목분류 및 원산지 분야 판정문 10건을 리포트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번호	분야	품명	판정번호
1	품목분류	전기식 비데(Toilet seat and electronic bidet)	H337323
2		전동식 스쿠터(Mobility scooters)	H351832
3		유압 실린더 및 액추에이터(Hydraulic cylinder and actuator)	N358476
4		렌즈 조작 모듈(Lens manipulator module)	N359267
5		현수 스트링(Suspension strings)	N358868
6		보행기 바퀴 커버(Plastic walker wheel nut cover)	N358851
7		장식용 목재 명판(Wooden decorative plaque)	N359164
8		도서 세트(Book set)	N358829
9	원산지	차량 시동장치(Automotive starter)	N358614
10		보조배터리(Power bank)	N358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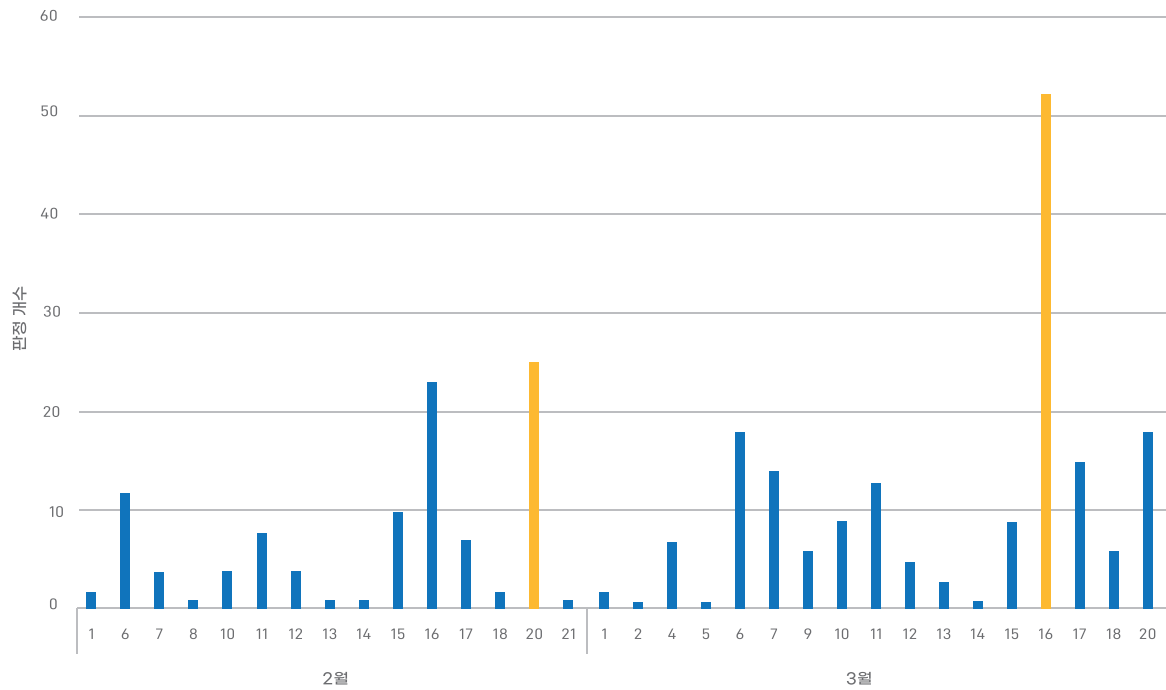
(2) 분야별 판정 현황

- CBP의 분야별 판정 건수(4월 13일 조회일 기준)는 2월 대비 3월에 품목분류와 원산지 분야 모두 증가하였으며, 전체 판정 건수는 품목분류 분야가 원산지 분야보다 약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월 품목분류 판정 108건 | 원산지 판정 41건
 - 3월 품목분류 판정 185건 | 원산지 판정 68건

(3) 품목별(HS 부 기준) 판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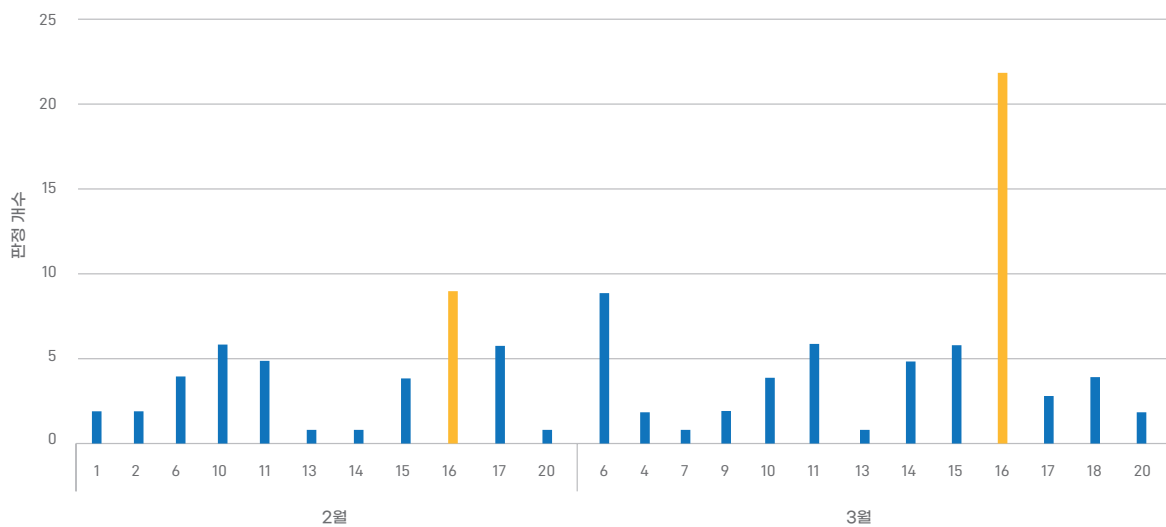
- 품목분류 분야 : 3월 CBP 품목분류 판정 사례 분석 결과, 기계류(제16부), 화학공업 생산품(제6부), 그리고 잡품(제20부) 등이 상위 품목군으로 확인됨.
 - 2월 제20부(잡품),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 제6부(화학공업생산품)
 - 3월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 제6부(화학공업생산품), 제20부(잡품)

〈그림 1〉 2026년 2~3월 품목별 품목분류 판정 건수



- 원산지 분야 : 3월 CBP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결과, 기계류(제16부), 화학공업생산물(제6부) 그리고 섬유제품(제11부) 등이 상위 품목군으로 확인됨.
 - 2월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 제17부(수송기기), 제10부(펄프·종이·인쇄서적)
 - 3월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 제6부(화학공업생산물), 제11부(방직용 섬유제품)

〈그림 2〉 2026년 2~3월 품목별 원산지 판정 건수





02. 품목분류 판정 사례

2-1

품목분류 CASE 1 (제39류 플라스틱 제품)

(1) 품목정보

품 명	전기식 비데(Toilet seat and electronic bidet)
판정번호	HQ H337323
판정일자	2026-03-10
신청국가	미국
HTSUS	3922.20.00
제품설명	• 대상물품 : 플라스틱 재질의 변기 시트 및 덮개와 전기식 비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 • 기능 : 시트 내부에 열선 코일이 내장되어 있어 가열이 가능하며, 스테인리스 스틸 노즐이 장착된 비데는 다양한 세정 모드와 에어 드라이어 기능을 갖추고 있음 • 형태 : 시트 형상에 따라 R 모델과 E 모델로 구분 • 구성 : 비데 조작을 위한 리모컨이 함께 제공
참고 사진	 *사진 출처 : COWAY USA Online Dealer 웹사이트

(2) 쟁점사항

- 변기 시트, 덮개 및 전자식 비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제품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3922.20호 : 플라스틱 재질의 변기용 시트와 커버
 - 제8424.89호 :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

(3) 관련 규정

1) 제3922호 해설

- 이 호에는 보통 상수도나 하수도 시스템에 연결함으로써 적절한 위치·주택 안에 영구히 부착되도록 설계된 용구류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휴대용 비데·유아용 목욕통과 캠프용 화장실 등과 같은 유사한 규격과 용도의 그 밖의 위생용품도 분류한다.

2) 제8424호 해설

- 이 호에는 분사·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고체의 물질[예: 모래·가루·알갱이·그릿(grit)·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4) 분석 및 판정

1) 제3922호(플라스틱 재질의 위생용품) 분류 여부 판단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노즐을 통해 세정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식 비데로서, 액체 등을 분사하는 기기가 분류되는 제842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제8424호에 분류되는 물품에는 증기·액체·고체를 분사·살포·분무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 이에 대해 CBP는 쟁점물품이 플라스틱 재질의 변기 시트, 덮개 및 전자식 비데가 결합된 복합물품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제3922호의 용어에는 변기 시트와 커버뿐만 아니라 비데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시트와 커버의 의미는 비교적 명확한 반면, 비데는 HS상에서 별도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CBP는 사전 등 외부 자료를 통해 비데의 통상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 Merriam-Webster 사전 : 비데를 외부 생식기 및 항문 부위를 세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욕실 설비로 정의
 - Dictionary.com : 생식기 및 항문 부위를 세정하기 위한 물줄기를 제공하는 대야 형태의 욕실 설비, 또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일반 변기에 부착하는 장치로 정의

- CBP는 변기에 부착되는 기계식 비데를 제3922호로 분류한 사례(HQ H320467)가 있다. 해당 물품은 시트나 커버를 포함하지 않고 변기와 시트 사이에 설치되는 구조였으며, 급수 배관에 연결되어 물을 공급받는 방식이었다. CBP는 해당 판정에서 비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트나 커버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며, 변기에 고정하여 부착되도록 설계된 경우에도 비데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 한편 CBP는 별도의 물탱크를 갖추고 급수 배관에 연결되지 않는 개인용 세정기기는 비데와 구별되어야 하며, 이러한 물품은 제8424호로 분류된다고 보았다.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배관 라인에 영구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휴대용 세정기기와 동일한 물품이라고 주장했지만 CBP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물품은 변기에 볼트로 고정되고 급수 배관에 연결되어 물을 공급받는 구조로, 개인용 세정기기와 달리 별도의 보충형 물탱크가 없다. 신청인이 언급한 탱크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열을 위한 장치로, 급수 배관을 통해 유입된 물이 해당 장치에서 가열된 후 분사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물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보충하는 것이 아니며 주택의 급수 시스템으로부터 공급된다. 또한 분사 장치 역시 손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변기에 고정된 상태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결론적으로 CBP는 쟁점물품은 비데의 통상적인 정의를 충족하는 물품으로, 휴대용 개인 세정기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8424호로의 분류를 배제하였다.

2) 제3922호 하위 6단위 소호 분류

- 제3922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대·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와 커버·수세용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을 포함하며, 하위 소호는 변기용 시트와 커버(제3922.20호)와 기타(비데 등)(제3922.90호)로 구분된다.
- 쟁점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변기 시트, 커버 및 비데가 일체로 결합된 제품으로, 각 구성요소는 제3922호 내에서 서로 다른 소호에 해당한다. 이에 CBP는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물품이 어느 소호에 가장 적합한지를 검토하였다.
- CBP는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중 변기 시트와 커버가 제품의 기본적인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비데의 세정 기능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작동하는 반면, 변기 시트는 매번 사용 시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비데 기능이 전혀 사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제품은 변기 시트와 커버로서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 이에 CBP는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이 변기 시트와 커버에 있다고 보아, 제3922호의 하위 6단위 중 변기용 시트와 커버가 분류되는 제3922.20호로 품목번호를 결정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는 전자식 비데가 결합된 변기용 시트를 제8424호(분사용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3922호(플라스틱 위생용품)로 분류할 것인지에 관하여 신청인과 CBP의 견해가 대립하였다.
- CBP는 쟁점물품이 주택의 급수 배관에 연결되어 물을 공급받는 구조로, 내부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탱크가 없고, 노즐이 고정되어 있어 수동 조작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용 세정기기와 구별된다고 판단하였다.
- 나아가 CBP는 쟁점물품의 소호 분류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비데의 세정 기능보다 매 사용 시 필수적으로 기능하는 변기 시트와 커버의 역할이 우선한다고 보아, 제3922.20호(변기용 시트 및 커버)로 최종 분류하였다.

(1) 품목정보

품 명	전동식 스쿠터(Mobility scooters)
판정번호	HQ H351832
판정일자	2026-03-04
신청국가	스페인
HTSUS	8703.90.01
제품설명	• 대상물품 : 전동식 스쿠터 3종 • 용도 : 환자, 노인 및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이동 보조 수단 • 모델별 사양 ① 모델 1 : 중량 198파운드의 대형 모델로, 최고 속도는 시속 9.3마일이며, 백미러·전조등 방향 지시등이 장착되어 있음 ② 모델 2 : 중량 99파운드의 모델로, 최고 속력은 시속 4.3마일, 전조등·전면 바구니·충돌 방지 바·경적이 장착되어 있음 ③ 모델 3 : 중량 49.5파운드의 접이식 모델로, 최고 속도는 시속 4.3마일이며, 전조등과 경적이 장착되어 있음
참고 사진	 *사진 출처 : Kmina 웹사이트

(2) 쟁점사항

- 환자, 노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전동식 스쿠터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8703호 :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 제8713호 : 신체장애인용 차량

(3) 관련 규정

1) 제8713호 해설

- 이 호에는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이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과 휠체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차량이 분류한다.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신체장애인용의 차량은 보통 경량 엔진으로 구동되거나 레버나 핸들조작기구에 의해 손으로 구동한다. 그 밖의 신체장애인용 차량은 손으로 밀거나 직접 손으로 차량을 조작하여 구동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신체장애인용으로 간단히 개조된(adapted) 보통의 차량(예: 수동식의 클러치·액셀러레이터 등을 갖춘 자동차(제8703호)나 특수한 부착물이 갖추어졌거나 한발로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륜자전거(제8712호))

(4) 분석 및 판정

1) 신체장애인용 차량 분류 여부 판단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환자, 노인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보조하기 위한 전동식 스쿠터로 제8713호의 장애인용 차량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제8713호에는 신체 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과 휠체어 등이 분류된다. 분류의 핵심 기준은 해당 물품이 신체 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었는지 여부이다. 반면, 신체 장애인용으로 단순 개조된(simply adapted) 통상의 차량은 이 호에 분류될 수 없다. 품목 해설서에서는 그러한 개조 제품의 예시로 수동식 클러치·가속 페달 등을 갖춘 자동차, 특수 부착물이 장착되거나 한 발로 페달을 조작할 수 있도록 개조된 이륜자전거를 들고 있다.
- 신청인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8713호로 분류된 유사 사례의 스쿠터들을 제시하였다. 해당 사례의 스쿠터들은 장애인용으로 FDA 승인이 예정된 전동식 스쿠터이거나, 가정·쇼핑센터·공원 등 특정 장소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최고 속도는 시속 4마일 수준이었다.

- CBP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근거를 통해, 쟁점물품이 유사사례에서의 스쿠터와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첫째, 쟁점물품의 일부 모델은 최고 속도가 시속 약 9마일로, 유사사례 스쿠터의 2배 수준에 달한다.
 - 둘째, 쟁점물품은 전조등과 경적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첫 번째 모델에는 백미러와 방향지시등까지 장착되어 있다. 이는 유사사례 스쿠터에는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이다.
 - 셋째, 유사사례의 스쿠터는 실내 또는 제한된 환경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보조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이는 낮은 최고 속도와 도로 주행에 필요한 장치(백미러·경적·방향 지시등 등)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해당 모델들은 ‘장애인용’ 또는 ‘장시간 보행이나 서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품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 결론적으로 CBP는 쟁점물품을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으나, 그것이 주된 설계 목적이나 용도의 제한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쟁점물품은 개인의 이동능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2) 전동식 스쿠터의 품목분류

- 제87류에는 각종 자동차가 분류되는데,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제8703호에 분류된다. CBP는 쟁점물품이 전동 모터를 갖춘 차량으로서, 탑승자의 이동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의 수송을 위해 사용되는 스쿠터에 해당하므로, 제8703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는 쟁점물품이 신체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전동식 스쿠터가 장애인용 차량으로 분류된 선례도 존재하나,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이와 다른 판단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일반 도로 주행에 필요한 장치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다.
- 특정 물품이 ‘특별히 설계’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반물품과 구조 및 기능상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설계상 목표로 하는 대상 이외의 사용자에게는 해당 물품의 활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특정 용도 이외의 활용을 제한한다는 설명이 명시되어 있는지, 또는 특정한 수요자를 한정하여 판매되는 물품인지 여부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1) 품목정보

품 명	유압 실린더 및 액추에이터(Hydraulic cylinder and actuator)
판정번호	NY N358476
판정일자	2026-03-02
신청국가	미국
HTSUS	8412.29.8045
제품설명	• 대상물품 : 농업용 파종기에 장착되는 유압 실린더 및 액추에이터 • 기능 1. 유압 실린더 : 유압을 선형 기계력으로 변환하여 기계의 작업 깊이, 위치 및 작동 상태를 제어하며, 고강도 작업을 정밀하게 수행 2. 액추에이터 : 에너지를 정밀한 기계적 운동으로 변환하여 파종 깊이 조절, 씨앗·비료 투입량 조정, 줄 표시기 조작 등을 수행 • 사용목적 : 작업 정확도를 높여 종자 낭비를 줄이고 작물 수확량을 최적화

(2) 쟁점사항

- 파종기의 유압 실린더 및 액추에이터를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HS 코드
 - 제8432호 :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
 - 제8412호 : 그 밖의 엔진과 모터

(3) 관련 규정

1) 제16부 주 제2호

-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2) 제8412호 해설

- (B) 액압식 엔진과 액압식 모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3) 액압식 실린더(hydraulic cylinder) : 이들은 예를 들면, 구리나 철강으로 만든 배럴(barrel)과 피스톤(piston)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피스톤은 가압된 오일이나 그 밖의 액체가 피스톤의 일방에 작용하거나[단동 : single acting)] 양방에 작용하여[복동 : double acting)]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이러한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는 선(linear) 운동으로 변환된다. 이들 실린더(cylinder)는 공작기계·건설기계·조종장치 등에 사용한다.
 - (5) 액압식 서보모터(hydraulic servomotor) : 이것은 피드백(feedback) 제어장치나 조정장치에서 최종시동기나 중간 시동기의 역할을 한다. 이들 서보 모터(servomotor)는 예를 들면, 항공기에 사용한다.

(4) 분석 및 판정

1)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 해당 여부 판단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농업용 파종기에 장착되는 핵심 부품으로서, 유체의 압력 에너지를 기계적 직선 운동으로 변환(유압 실린더)하거나 장비의 미세한 움직임을 구현(액추에이터)하므로, 제8432호의 농업용 토양 준비 또는 경작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제8432호에는 농업용 기계 본품뿐만 아니라 전용 부분품도 함께 분류되며, 해설서에서는 쟁기의 자루·날·경토판, 경운기용 판상날·롤러용 실린더·세그먼트와 부분품, 비료 살포기·파종기·이식기 등의 배분 장치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 이에 대해 CBP는 쟁점물품인 유압 실린더 및 액추에이터가 제84류 내의 특정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의 특정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부 주 제2호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여야 한다(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이러한 호는 모두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이다)는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쟁점물품은 제8412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의 예외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CBP는 제16부 주 제2호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제8432호(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에서 배제하였다.

2) 액압식 모터의 품목분류 판단

- 제8412호에는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이 호의 유압식 엔진 및 모터에는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를 직선 운동으로 변환하는 액압식 실린더와 제어장치 또는 조정장치에서 시동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액압식 서보모터가 포함된다.
-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유압식 모터가 분류되는 제8412.29.8045호로 결정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 CBP는 쟁점물품인 유압 실린더 및 액추에이터가 농업용 기계(제8432호)에 사용되는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제84류 내 특정 호(제84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아 제16부 주 제2호를 근거로 해당 호에 우선 분류하였다.
- 기계류의 부분품 중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내의 특정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있으며, 모터와 엔진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물품은 실제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제16부 주 제2호에 따라 해당 호로 우선 분류될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품목정보

품 명	렌즈 조작 모듈(Lens manipulator module)
판정번호	NY N359267
판정일자	2026-03-13
신청국가	미국
HTSUS	8486.90.0000
제품설명	• 대상물품 : 반도체 포토리소그래피 장비(스캐너)에 설치되는 교체용·업그레이드용 렌즈 조작 모듈 • 기능 : 반도체 웨이퍼 노광 공정에서 발생하는 광파의 수차를 보정·완화하여 이미지 품질 향상 • 작동방식 : 모듈 내부 유리의 특정 영역을 가열 또는 냉각하여 수차를 보정 • 구성 1. 유리 부품으로 구성된 렌즈 조작기 2. 공기냉각용 밸브 3. 압력센서 4. 발열체 5. 다중온도센서 6. 인쇄회로기판(PCB) 및 전자부품

(2) 쟁점사항

- 반도체 제조 장비(스캐너)에 결합되어 수차 보정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8486.20호 :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기계와 기기
 - 제8486.90호 : 반도체 제조용 기계·기구의 부분품 및 부속품

(3) 관련 규정

1) 제8486호 해설

- 이 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와 장치를 분류한다.
- (B)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 이 그룹에는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 예를 들면, 석판인쇄 장비(lithography equipment) : 감광액이 도포된 반도체 웨이퍼(wafer) 표면에 회로모형을 전사하는 기계
- (E) 부분품과 부속품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툴홀더(tool holder)와 그 밖의 특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

(4) 분석 및 판정

1) 제8486.20호(반도체 제조용 기계) 분류 여부 판단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광파의 수차를 보정하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제8486.20호의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기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제8486호의 하위 소호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제8486.10호부터 제8486.40호까지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본품(기계·기구)이 분류되며, 이들 기계·기구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486.90호에 별도로 분류되는 구조이다.
- CBP는 먼저 쟁점물품이 제8486호 내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본품이 분류되는 소호가 아닌 부분품이 분류되는 소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CBP는, 쟁점물품이 반도체 제조 장비인 스캐너(본품)의 렌즈 장치에서 필수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개별 기능을 가진 장치로 볼 수 없고, 모듈의 기능인 수차 보정은 회로 패턴을 그리는 스캐너의 기능과 구별되나 두 기능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따라서 CBP는 쟁점물품이 단독으로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기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품이 분류되는 소호인 제8486.20호로의 분류를 배제하였다.

2)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 분류

- 반도체 제조용 기계·기구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486.90호에 분류한다. 쟁점물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품(스캐너)의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차 보정용 렌즈 조정 모듈에 해당하므로, CBP는 제8486.90호로의 분류를 최종 결정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는 반도체 제조 장비에 장착되는 모듈을 본품과 같은 단위의 기계·기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조 장비의 일부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신청인과 CBP의 견해가 대립하였다.
- 이에 대해 CBP는 본품인 스캐너와 쟁점물품인 모듈이 각각 구별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두 기능이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기능을 스캐너의 기능과 분리하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반도체 제조 장비와 같이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는 여러 모듈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모듈이 본품과 별도로 분리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개별적인 품목분류가 필요하며, 이때 모듈의 기능이 본품의 기능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가 품목분류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1) 품목정보

품 명	현수 스트링(Suspension strings)
판정번호	NY N358868
판정일자	2026-03-10
신청국가	미국
HTSUS	8546.90.0000; 7326.90.8688
제품설명	• 대상물품 : 고전압 전력 송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현수 스트링 3종 • 용도 : 고전압 전선이 송전탑 구조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매달아 전기적으로 분리 1. 품목 1 : 강철 합금 부품이 대부분의 중량을 차지하며, 고무와 유리섬유로 이루어진 복합 절연 구성요소를 포함함. 전선에 물리적 지지력과 장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류로부터 송전탑을 절연하는 기능을 수행 2. 품목 2·3 : 강철 합금 부품이 대부분의 중량을 차지하는 점은 품목 1과 동일하나, 절연 구성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전선에 물리적 지지력과 장력을 제공하는 기능만을 수행

(2) 쟁점사항

- 고전압 송전탑의 전선에 사용되는 현수 스트링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8535호 :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 제8538호 : 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제8546호 : 애자(Electrical insulators)
 - 제8548호 :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제7326호 : 철강제 제품

(3) 관련 규정

1) 제8546호 해설

- 이 호의 애자(insulator)는 전류의 도체(electric current conductor)를 고정·지지·안내하는 한편, 동시에 도체를 다른 도체, 대지 등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 물품(애자를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이러한 절연용 물품은 전체가 절연재료제의 것[전적으로 조립 목적만을 위해서 소량의 금속을 주조 공정 중에 장착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이라면 제8547호에 해당한다.
- 이 호에 해당되는 애자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현수형 애자(suspension insulator)

2) 제8548호 해설

- 이 호에는 특정한 기계류의 부분품으로서가 아닌 기계류의 전기식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물품과 전기적인 접속자·절연부분·코일·접속자나 그 밖의 특정한 전기소자를 갖춘 물품을 포함한다.

(4) 분석 및 판정

1) 현수 스트링의 품목분류

- 쟁점물품인 현수 스트링은 송전선로에서 전선을 송전탑에 매달아 하중을 지지하고, 전선과 철탑 사이의 절연을 유지하도록 하는 물품이다.
- 신청인은 현수 스트링 3종 중 절연 기능이 있는 품목 1에 대해서는 제8546호(애자)로의 분류를 주장하였다. 반면, 절연 기능이 없는 품목 2·3에 대해서는 제8546호,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8535호, 또는 해당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전기식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48호를 주장하였다. 이는 절연 기능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8546호의 애자로 분류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또는 전기식 부분품으로 보아 제85류(전기기기) 내에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 이에 대해 CBP는 절연 기능 여부를 기준으로 쟁점물품을 두 품목군으로 구분하여 품목분류를 판단하였다. 먼저 절연 기능이 있는 품목 1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제8546호로의 분류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 그러나 절연 구성요소가 없는 품목 2·3에 대해서는 제85류 내의 쟁점 호 중 어느 호에도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각 호에 대한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제8546호의 애자는 전기적 절연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인 반면, 품목 2·3은 절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해당 호에 분류될 수 없다.
- 품목 2·3은 전기적 연결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전기 회로의 접속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8535호 및 그 전용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38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절연 기능이 없는 현수 스트링은 전선을 지지하는 구조적 기능에 한정되므로 전기식 부분품으로 볼 수 없어 제8548호에서 배제된다.
- 결론적으로 CBP는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품목 2·3이 제85류 내의 어떠한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절연 구성요소가 없는 현수 스트링(품목 2·3)의 품목분류 판단

- CBP는 품목 2·3에 대하여 구성 재질에 따른 품목분류를 검토하였다. 품목 2·3의 구성 부품은 여러 종류의 비금속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5부 주7은 둘 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한 금속 제품은 중량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금속의 제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쟁점물품에서 대부분의 함유중량을 차지하는 금속은 아연도금 강철이다.
- 이에 따라 CBP는 절연 구성요소가 없는 품목 2·3에 대하여, 주 재질인 강철을 기준으로 기타 철강 제품이 분류되는 제7326호로의 분류를 최종 결정하였다.

(5) 결론

- 통상적으로 현수 스트링은 송전탑에서 전선의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과 전선과 송전탑 사이를 절연하여 탑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중 절연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절연 기능이 있는 품목은 애자가 분류되는 제8546호에 분류되었다.
- 반면 절연 구성요소가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전선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전기기기류(제85류)에서 분류가 배제되고, 구성 재질에 따라 제7326호로 분류가 결정되었다.

(1) 품목정보

품 명	보행기 바퀴 커버(Plastic walker wheel nut cover)
판정번호	NY N358851
판정일자	2026-03-06
신청국가	미국
HTSUS	3926.90.9989
제품설명	• 대상물품 : 접이식 보행 보조기(보행기)의 바퀴에 장착하는 휠 너트 커버 • 용도 : 바퀴에 노출된 휠 너트의 날카로운 모서리로 인한 벽, 수납장, 가구 등의 손상을 방지하고, 휠 너트 자체도 보호 • 재질 : 폴리프로필렌(PP) • 구조 : 5개의 연결 다리와 휠 너트 캡으로 구성되며, 각 연결 다리의 톱니가 휠 스포크와 맞물려 고정

(2) 쟁점사항

- 보행기 바퀴에 장착되는 휠 너트 커버가 보행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HS 코드
 - 제9021류 : 정형외과용 기기,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 제3926호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3) 관련 규정

1) 제90류 주 제2호

-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

2) 제9021호 해설

- 이 그룹에는 추가적으로 "보행자-롤레이터(walker-rollator)"라고 알려진 보행보조기를 포함하는데, 보행자들이 밀면서 그들을 지지해주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세 개나 네 개의 바퀴[이들 중 일부나 전부는 선회가 가능할 수 있다] 위에 놓인 관 형태의 금속 프레임(frame), 핸들과 핸드브레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보행자-롤레이터(walker-rollator)"는 높이가 조정 가능하거나 핸들 사이에 의자를 갖추거나 휴대물품 운반용 철사 바구니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의자는 사용자가 필요할 때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4) 분석 및 판정

1) 보행 보조기의 부분품 해당 여부 판단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보행 보조기의 전용 부분품으로서, 제9021호(정형외과용 기기 및 그 부분품·부속품)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제9021호에 분류되는 정형외과용 기기 그룹에는 롤레이터(rollator)로 알려진 보행 보조기가 포함된다. 보행 보조기는 보행자가 밀면서 신체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로, 일반적으로 바퀴와 금속 프레임, 핸들, 브레이크로 구성된다.
- 그러나 CBP는 쟁점물품의 기능이 돌출된 휠 너트를 덮어 주변 물품(벽, 가구 등)과 휠 너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인 반면, 보행 보조기의 기능은 보행 시 지지력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두 기능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보행 보조기의 기능 향상에도 기여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이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CBP는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물품을 보행 보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9021호로 분류하지 않았다.

2) 플라스틱 제품의 품목분류 판단

- 쟁점물품은 플라스틱을 커버 형태로 사출 성형하여 제작된 것으로, 품목분류 표 내에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호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CBP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989호로 결정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는 휠 너트의 커버가 보행 보조기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CBP는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이 보행 보조기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성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용 부분품으로의 분류를 배제하였다.
-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품목분류 업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으로, 해당 부분품이 본품의 기능과 실질적인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품목정보

품 명	장식용 목재 명판(Wooden decorative plaque)
판정번호	NY N359164
판정일자	2026-03-11
신청국가	루마니아
HTSUS	4420.19.0000
제품설명	• 용도 : 메시지를 기재할 수 있는 목재 명판으로, 합판 스탠드에 세워 장식용으로 사용 • 크기 : 12×9인치부터 30×24인치까지 다양한 규격으로 제공 • 소재 : 후면 패널은 중밀도 섬유판(MDF) 재질이며, 패널 전면에 포플러 합판 조각을 접착하여 제작 • 특징 : 레이저 각인이 가능하며, 이름·날짜 등을 새겨 맞춤 제작할 수 있음 • 구성 : 유성 마커 2개와 명판을 세워 놓을 수 있는 합판 스탠드가 함께 제공

(2) 쟁점사항

- 유성 마커와 받침용 스탠드가 함께 구성된 목재 명판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4420호 : 목재로 만든 장식품
 - 제9608호 : 펜과 마커

(3) 관련 규정

1) 통칙 제3호 (나)

-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2) 통칙 제3호 (나) 해설

- (Ⅷ)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 (X)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

3) 제4420호 해설

-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의력을 심히 기울이고 정교하게 만든 다양한 목제품(마르케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의 것을 포함한다), 즉, 정교한 세공품(예를 들면, 장식함 또는 보석상자); 소형 설비품; 장식 물품을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3) 작은 조각상·동물상·인물상과 그 밖의 장식품

(4) 분석 및 판정

1) 소매용 세트 해당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목재 명판, 받침용 스탠드, 유성 마커로 구성된 세트 제품으로, CBP는 통칙 제3호 (나)에 따른 '소매용 세트'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다.
- 먼저 CBP는 유성 마커(제9608호: 펜과 마커)가 목재 명판 및 스탠드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유성 마커와 스탠드 모두 목재 명판의 장식용 기능을 보완하여 전시 목적에 기여하므로, 전체 구성품이 특정 활동의 수행을 위해 함께 조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쟁점물품이 별도의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바로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포장되어 있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이 소매용 세트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다.

2)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구성요소 판단

- 통칙 제3호 (나)에 따르면, 소매용 세트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되며, 이러한 본질적 특성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재료·구성요소의 성질, 용적·수량·중량·가치, 그리고 사용 시 각 구성요소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CBP는 쟁점물품이 장식용품으로서, 선반 위에 세워 기재된 메시지를 전시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목재 명판이 전체 세트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고 판단하였다. 목재로 만든 장식용품은 제4420호의 용어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목재 명판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은 해당 호에 분류된다.
- 이에 따라 CBP는 전체 세트의 품목번호를 목재 장식품이 분류되는 제4420.19호로 결정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 목재 명판, 받침용 스탠드, 유성 마커로 구성된 쟁점물품은 메시지를 전시하여 장식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함께 조합된 소매용 세트로 인정되었다.
- 또한 CBP는 세트의 본질적 특성이 목재 명판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메시지를 기재하는 데 사용되는 유성 마커가 아닌, 메시지가 작성되는 목재 명판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판단 기준이 되었다.

(1) 품목정보

품 명	도서 세트(Book set)
판정번호	NY N358829
판정일자	2026-03-13
신청국가	미국
HTSUS	4901.99.0070; 4820.10.2060; 4911.00.0080; 4817.10.0000; 4911.91.2040; 4911.91.4040; 7907.00.6000; 9013.80.2000; 4823.90.8680
제품설명	• 대상물품 : 8종의 구성품이 종이박스에 함께 포장된 도서 세트 • 구성 1. 하드커버 도서 : 인류 문명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삽화와 텍스트가 수록된 도서 2. 하드커버 노트 : 공백 페이지 및 삽화가 인쇄된 노트 3. 소책자 : 출판사 및 제품에 대한 소개가 담긴 소책자 4. 카드 및 봉투 : 한 면에 출판사 로고, 반대면에 도서 홍보 문구가 인쇄된 카드와 봉투 5. 스케치 세트 및 봉투 : 삽화 또는 스케치가 인쇄된 종지와 봉투 6. 돋보기 : 합금 및 유리 재질의 손잡이형 돋보기 7. 책갈피 : 합금 및 유리 재질의 책갈피 8. 장식용 상자 : 도서, 책갈피, 돋보기 등 구성품을 보관하도록 제작된 장식용 상자 • 포장형태 : 완충재가 내장된 골판지 재질의 배송용 상자 안에 함께 포장

(2) 쟁점사항

- 다양한 구성품이 함께 포장된 도서 세트를 통칙 상의 소매용 세트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HS 코드
 - 제4901호 :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

(3) 관련 규정

1) 통칙 제3호 (나)

-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2) 통칙 제3호 (나) 해설

- (Ⅷ)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 (X)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

3) 통칙 제5호 (나)

-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4) 분석 및 판정

1) 소매용 세트 해당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종이상자에 서적, 노트, 카드, 책갈피, 돋보기 등 8종의 품목이 함께 포장된 도서 세트로서, CBP는 통칙 제3호 (나)에 따른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 소매용 세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둘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될 것, ② 특정한 단일의 목적 또는 활동을 위해 함께 조합될 것, ③ 재포장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될 것.
- 먼저 쟁점물품은 인쇄 서적, 돋보기, 책갈피 등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둘 이상 포함하고 있으므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모든 구성품이 종이 박스에 함께 포장되어 있어, 재포장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므로 세 번째 요건도 충족한다.
- 그러나 CBP는 두 번째 요건인 단일한 목적을 위해 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노트는 필기 행위를 위한 물품이고, 소책자 및 카드는 출판사 및 제품 홍보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이들 물품이 책을 읽는 행위(독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전체 구성품이 단일한 목적을 위해 함께 사용되도록 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CBP는 쟁점물품이 통칙에 규정된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 구성품은 개별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개별 구성품의 품목분류 결정

- 1. 하드커버 도서 : 인류 문명에 관한 내용의 도서로서, 인쇄 서적이 분류되는 제4901.99.0070호에 분류
- 2. 하드커버 노트 : 공백 페이지로 구성된 노트로서, 종이로 만든 노트가 분류되는 제4820.10.2060호에 분류
- 3. 소책자 및 카드 : 제품 소개, 도서 홍보 문구가 포함된 인쇄물로서, 광고·상업 카탈로그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이 분류되는 제4911.10.0080호에 분류
- 4. 봉투 : 종이 재질의 봉투가 분류되는 제4817.10.0000호에 분류
- 5. 스케치 : 삽화 또는 스케치가 인쇄된 종이로서, 만약 석판 인쇄 방식으로 제작된 경우 종이에 인쇄된 석판화가 분류되는 제4911.91.2040호에, 그 외의 방식으로 제작된 경우 기타 그림·도안 및 사진이 분류되는 제4911.91.4040호에 분류
- 6. 책갈피 : 합금 재질의 책갈피로서, 주 재질에 따라 아연으로 만든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 제7907.00.6000호에 분류
- 7. 돋보기 : 손잡이가 달린 합금 및 유리 재질의 돋보기로서, 수지식 확대경을 포함한 기타 광학 기기가 분류되는 제9013.80.2000호에 분류
- 8. 장식용 상자 : 구성품을 보관하는 장식용 상자로서, 해당 재질에 따라 종이·판지 등으로 만든 기타 물품이 분류되는 제4823.90.8680호에 분류

3) 배송용 상자의 품목분류 결정

- CBP는 통칙 제5호 (나)에 따라 배송용 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지 않았다. 동 조항은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포장용기 및 포장재가 해당 물품의 포장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인 경우 내용물과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구성품 중 장식용 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품목분류가 이루어졌다. 이는 해당 상자가 단순한 포장용 용기가 아니라 내구성을 갖추고 반복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통칙 제5호 (나)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는 서적, 노트, 돋보기, 책갈피 등 8종의 구성품이 함께 포장된 도서 세트를 통칙 제3호 (나)에 따른 소매용 세트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CBP는 소매용 세트의 세 가지 요건 중 ‘단일한 목적을 위해 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물품은 소매용 세트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각 구성품은 재질 및 기능에 따라 개별 품목번호로 분류되었다.
- 일반적으로 함께 포장되어 있는 세트 물품은 구성품 간에 용도상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관련성이 없는 물품을 묶어 판매하는 사례는 상업적으로 흔하지 않다. 그러나 품목분류 목적상 소매용 세트 해당 여부는 통칙의 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정한 상업적 연관성이 인정되더라도 통칙상 소매용 세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03. 원산지 판정 사례

3-1 원산지 CASE 1 (제85류 전기기기)

(1) 품목정보

품 명	차량 시동장치(Automotive starter)
판정번호	NY N358614
판정일자	2026-03-06
신청국가	미국
원산지 판정	• 비특혜원산지 : 미국
제품설명	• 대상물품 : 차량의 엔진 플라이휠을 작동시켜 시동을 거는 전기기계식 장치 • 구성요소 : 전기자, 솔레노이드, 구동장치, 하우징, 브래킷 및 전기 단자 등으로 구성 • 수입형태 : 미국 내 차량에서 분리한 중고 시동장치 코어를 말레이시아로 반출한 다음, 재생산을 통해 성능 복원 후 미국으로 재수입 • 재생산 절차 ① 분류 및 확인 : 중고 코어를 모델 및 사양별로 분류, 초기 검사 수행 ② 표면 처리 및 세척 : 표면 복원을 위한 오일 제거, 블라스팅 및 부식 제거 ③ 치수 검사 및 선택적 기계 가공 : 주요 부위 검사, 필요 시 규격에 맞게 재작업 ④ 부품 검증 : 절연 및 정류자 테스트, 솔레노이드 플런저 이동 거리 및 복귀력 점검, 기어 조립 검사 ⑤ 조립 및 피팅 : 압입 작업, 토크 제어 체결 및 정렬 작업 ⑥ 기능 테스트 : 전류 소모 및 속도 시험, 솔레노이드 당김 및 유지 시험, 소음 점검 ⑦ 보호 처리 및 포장 : 방청 처리, 최종 외관 검사, 라벨링, 수출용 포장 * 재생산 과정에서 단자, 배수관, 레버 고무링, 커버, 롤러, 스프링, 와셔 등 보조 부품이 추가로 장착될 수 있으며, 해당 부품들은 중국에서 공급

(2) 쟁점사항

- 미국 내 차량에서 분리한 중고 시동장치 코어를 국외로 보내 재생산(성능 복원)을 거친 후, 미국으로 재수입하는 경우의 비특혜원산지 결정 방법

(3) 분석 및 판정

1) 재생산(Remanufacturing) 과정의 실질적 변형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중고 시동장치 코어를 재생산해서 성능을 복원한 물품으로, 재생산 과정에서 표면 세척, 검사, 조립, 정렬, 방청 처리, 라벨링 및 포장 등이 수행된다. 또한 공정에 따라 단자, 커버, 스프링 등 보조 부품이 제품에 부가될 수 있다.
- CBP는 재생산된 자동차 부품에 관한 기존 원산지 판정 사례(H171035)에서, 재생산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사례에서 CBP는, 재생산 공정을 거친 후에도 중고 부품의 성질(구조, 형태, 재료,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해외에서 수입된 중고 코어를 미국 내에서 재판매용으로 정비하는 경우에도, 해당 코어의 원산지가 미국으로 변경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이에 CBP는 기존 사례와 동일하게, 본 사안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된 일련의 재생산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결합된 중국산 보조 부품 역시 원산지를 변경할 정도의 요소로 보지 않았다. 즉, 해당 공정을 거치더라도 가공 전후 물품의 명칭·특성·용도에는 변화가 없다고 본 것이다.

2) 중고 시동장치 코어의 원산지 판단

- 제3국에서 수행된 재생산 공정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재생산 이전 중고 코어의 원산지를 최종 물품의 원산지로 보아야 한다. 다만 해당 코어에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어, 미국산인지 외국산인지 여부를 특정하기 어렵다.
- 이에 대해 CBP는 별도의 원산지 표시가 없어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이 장기간 사용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해당 물품이 최초 생산국과의 실질적 연관성을 상실했다는 점에 근거한 판단이다.
- 따라서 CBP는 시동장치 코어에 원산지 표시가 없어 당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미국에서 장기간 운행된 차량에서 수집된 중고 부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 본 사례에서 CBP는 두 가지 주요 판단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고 시동장치의 성능을 복원하기 위한 재생산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재생산 공정을 거치기 이전, 미국에서 수집된 시동장치 코어의 원산지를 쟁점물품의 원산지로 판단하였다.
- 다음으로, 해당 중고 코어는 미국에서 장기간 사용된 물품으로서 원래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그럼에도 CBP는 이를 미국산으로 간주하였다. 실제 원산지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당초 원산지 국가와의 연관성이 단절된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사용한 기간이 짧거나 원산지 표시 등으로 원산지 국가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사안을 검토할 때에는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품목정보

품 명	보조배터리(Power bank)						
판정번호	NY N358901						
판정일자	2026-03-04						
신청국가	미국						
원산지 판정	• 비특혜원산지: 말레이시아						
제품설명	• 대상물품 : 리튬이온 배터리 셀이 내장된 휴대용 보조 배터리 • 기능 : 용량 10Ah, 최대 출력 35W의 전력 저장·공급 장치 • 구성요소 <table border="0"> <tr> <td>1. 2개의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 셀</td><td>2. USB-C 케이블</td></tr> <tr> <td>3. USB-C 포트</td><td>4. 무선 스마트워치 충전기</td></tr> <tr> <td>5. LCD 화면</td><td></td></tr> </table> • 제조과정 : 말레이시아산 배터리 셀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의 조달 및 조립은 모두 중국에서 수행 ① 배터리 셀을 단열재로 감싼 후, 셀 단자에 전선을 납땜하고 열수축 튜브를 부착 ② 무선 충전 코일을 보호 커버에 장착한 다음, 인쇄회로기판에 납땜하고 상단 하우징에 고정 ③ 배터리 셀과 위치 충전모듈을 인쇄회로기판에 납땜한 다음 하단 하우징에 고정 ④ USB 충전 케이블 연결 및 실리콘 도포 후, 상단 하우징과 하단 하우징을 압착 밀봉 ⑤ 외관 검사, 기능 시험 및 교정 작업	1. 2개의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 셀	2. USB-C 케이블	3. USB-C 포트	4. 무선 스마트워치 충전기	5. LCD 화면	
1. 2개의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 셀	2. USB-C 케이블						
3. USB-C 포트	4. 무선 스마트워치 충전기						
5. LCD 화면							
참고 사진	 *사진 출처 : Anker 웹사이트						

(2) 쟁점사항

- 말레이시아산 배터리 셀을 중국에서 다른 구성품과 함께 조립하여 제조한 보조배터리 완제품의 비특혜원산지 결정

(3) 분석 및 판정

1) 실질적변형 발생 여부 판단

- 제품의 제조 공정이 두 국가 이상에서 수행된 경우, 해당 물품에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일으킨 최종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한다.
- 실질적 변형 여부는 가공을 거친 물품이 가공 이전과 비교하여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를 갖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중 배터리 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품은 중국에서 조달되었으며, 완제품 조립 공정 또한 중국에서 수행되었다. 한편, 배터리 셀은 배터리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요소로서 핵심 부분품에 해당한다.
- CBP는 배터리 셀을 플라스틱 하우징에 조립하는 공정은 배터리 셀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HQ 563045, HQ 734393)
- 배터리 셀의 기능은 전력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것으로, 완성된 보조 배터리에 탑재된 이후에도 그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즉, 케이블, 포트, 충전 모듈, 하우징 등 중국산 부품과 결합되기 이전의 배터리 셀과 완성품인 보조배터리 간에는 기능상 차이가 없으며, 전력의 저장 및 공급이라는 당초 배터리 셀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다.
- 따라서 CBP는 본 사례에서 중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보조배터리의 비특혜원산지 판단

- 중국에서 수행된 조립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의 비특혜원산지를 핵심 부분품인 배터리 셀의 원산지(말레이시아)로 결정하였다.

(4) 결론

- CBP는 본 사례에서 보조배터리의 핵심 기능인 전력의 저장 및 공급을 담당하는 배터리 셀의 원산지를 쟁점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하였다. 이는 충전 케이블, 포트, 하우징 등의 부품이 배터리 셀에 결합된 이후에도 완성품의 주된 기능이 여전히 전력의 저장·공급에 있으므로, 배터리 셀과 완제품 간에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할 정도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CBP 사전심사 동향 분석 리포트

조현기 | 연구 2파트 | 부연구위원

E-mail: chg90@kctdi.or.kr, Tel: 02-3416-5168

공하은 | 연구 2파트 | 연구원

E-mail: ghe@kctdi.or.kr, Tel: 02-3416-5165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